

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	30일		
기 업	명 칭 (홈페이지 :)			업 종 (주요 생산·개발품)				
	성 명(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) (한자 :)			생년월일				
	주 소			전화번호				
				팩스				
	총자산(자본금) 백만원(백만원)		종업원 수 명		매출액(년도) 백만원			
	기업유형 [] 대기업 [] 중소기업 [] 벤처기업		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번호					
		외국인투자법인인 경 우		투자국		투자지분 %		
창작전담 부서	전담부서명			연구 분야 [] 영화 [] 음악 [] 게임 [] 출판 [] 방송 영상물 [] 만화 [] 캐릭터 [] 애니메이션 [] 에듀테인먼트 [] 모바일 [] 공연 [] 광고 [] CT기술 [] 기타(주된 연구 분야:)				
	주 소			전화번호				
				팩스				
	창작전담요원			명		창작시설 종		
	건물형태		유형 [] 독립건물 [] 분리구역 [] 임대건물		전용면적 대지 m² 면적 m²			
연구개발투자 (년도)	연구비(인건비 포함) 백만원		시설비 및 기자재비 백만원		그 밖의 운영비 백만원			

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17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기업 대표자

(서명 또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	-----------

신청인 제출서류	1. 창작사업 개요서 1부 2.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. 창작시설 명세서 1부 4. 회사 조직도 1부 5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사업자등록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 청	→	접 수	→	검토 및 필요 시 현지 확인	→	결정	→	인정서 발급
신청인		처 리 기 관 (문화체육관광부)		처 리 기 관 (문화체육관광부)		처 리 기 관 (문화체육관광부)		